

전남개발공사 2025년 기간제 근로자(보상직) 및 청년 체험형 인턴 채용 공고

전남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전남개발공사에서 다음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(보상직) 및 청년 체험형 인턴을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5년 7월 7일
전남개발공사 사장

선발 예정인원 및 담당 업무

구분	직급	인원	주요업무	근무지
보상직 (경력경쟁)	계약 다급	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기본조사 및 토지·물건조사 작성에 관한 업무· 보상계획의 수립·공고·열람에 관한 업무· 보상협의,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업무·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업무· 영업농업축산업 손실 보상, 수용재결(이의재결)업무· 그 밖에 공익사업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등	나주 보상사무소 (나주시 왕곡면 일원)
청년 체험형인턴 (공개경쟁)	인턴	10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일반 행정 사무 보조	본사 (무안군 삼향읍)

※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.

※ 지원자가 선발 예정인 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.

근무 조건

구분	계약기간	근무시간	보수	비고
보상직	2025. 8. 4. ~2027. 4. 3. (1년 8개월)	주 5일(40시간)	연 40,696,920원 (소득세 및 4대 보험 포함)	성과급, 초과근무수당, 복리후생비 개별 사안에 따라 지급
청년 체험형인턴	2025. 8. 4. ~2025. 9. 3. (1개월)	1일 8시간(09:00~18:00)	월 2,493,370원 (소득세 및 4대 보험 포함)	2025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기준

※ 임용일자 : 2025년 8월 4일 예정(임용 예정일은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)

※ 고용형태 : 기간제 근로자(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)

응시 자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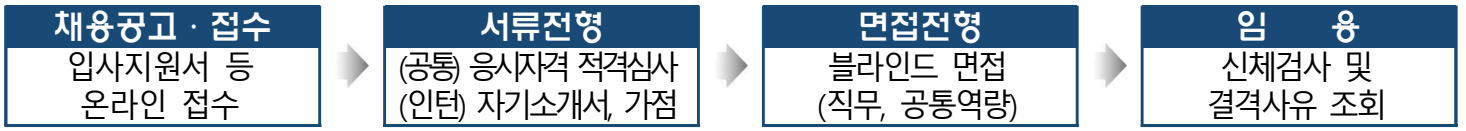
1 보상직(경력경쟁)

구 분	응시 자격
응시연령	○ 채용예정일(25. 8. 4.)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
필수자격	<p>○ 학사 학위자로서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상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상업무 6년 이상 수행경력*이 있는 자</p> <p>* 해당 경력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경력기간을 각 각 월 단위로 계산하여 합산함. * 기업체 근무경력 : 기재(제출)된 경력증명서(필수)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필수)를 교차 확인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준으로 최종 판단</p> <p>[보상전문기관]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보상전문기관</p> <p>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농어촌공사, 한국부동산원,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특별시, 광역시, 도 및 특별자치도 지방공사</p> <p>○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</p>
결격사유	<p>○ 전남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4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는 자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.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서 정하는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2 청년 체험형 인턴(공개경쟁)

구분	응시 자격
응시연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채용 예정일('25. 8. 4.)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※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적용 : 1991. 8. 5. ~ 2007. 8. 4. 출생자
지역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래 ①, ②, ③항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(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) ② 공고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행정구역의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,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기간을 월(月)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응시 가능합니다.(잔여 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) * 예) 1986.11.1. 이전 ‘전라남도 광주시’ 거주 사실은 현재의 ‘광주광역시’ 거주 사실로 인정되므로 전라남도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※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“개인별 주민등록표”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※ 재외국민(해외영주권자)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합니다. </div> ③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·대학교 졸업(예정)인 자로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
결격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고일 기준 취업이 결정된 자(현재 근무 중인 자) ○ 전남개발공사 청년 체험형 인턴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○ 전남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4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는 자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.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서 정하는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전형절차



전형방법

1 보상직(경력경쟁)

전형단계	평가기준 및 배점	심사방법 및 기준
서류전형	적격심사(적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합격자 결정기준 : 적격여부 판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적격자 전원 합격 처리 - 서류전형 결과 자격증 및 경력사항 등에 대해 허위사실 또는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
면접전형	직무역량(60) 공통역량(4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가 항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무역량(개인별 집중 질의 및 답변 형식으로 직무능력 평가) - 공통역량(인성, 자질 평가, 사회적 가치 내재화 평가) ○ 합격자 결정 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- 면접자별 최고·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후 60점 이상 취득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(1배수) ○ 동점자 처리 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아래 각호의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1. 취업지원대상자 2. 보상업무 분야 관련 경력 합산기간이 긴 순 ○ 예비합격자 운영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예비합격 규모) 합격자 다음의 1배수 - (운영방법)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, 임용 결격 사유 해당 및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 ※ 단, 면접전형 점수 60점 미만일 경우 제외

2 청년 체험형 인턴(공개경쟁)

전형단계	평가기준 및 배점	심사방법 및 기준
서류전형 (3배수)	적격심사(적부) 자기소개서(10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합격자 결정기준(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기소개서 점수 환산 결과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- 서류전형 결과 자격증 및 경력사항 등에 대해 허위사실 또는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○ 동점자 처리 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○ 예비합격자 운영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합격자 다음의 1배수까지 예비합격자를 두며 그 지위는 면접전형 전일까지 유효 ※ 단, 서류전형 점수 60점 미만일 경우 제외

면접전형	직무역량(60) 공통역량(4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가 항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무역량(개인별 집중 질의 및 답변 형식으로 직무능력 평가) - 공통역량(인성, 자질 평가, 사회적 가치 내재화 평가) ○ 합격자 결정 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- 면접자별 최고·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후 60점 이상 득점자 중 서류전형 30%, 면접전형 70%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(1배수) ○ 동점자 처리 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아래 각호의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1. 취업지원대상자 2.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자 ○ 예비합격자 운영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예비합격 규모) 합격자 다음의 1배수 - (운영방법) 예비합격자의 지위는 임용 등록 마감일로부터 7일간 유효하며,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, 임용 결격 사유 해당 및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 <p>※ 단, 면접전형 점수 60점 미만일 경우 제외</p>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

■ 전형일정

구 분	일 정	내 용
채 용 공 고	7. 7.(월) ~ 7. 17.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홈페이지 (www.jndc.co.kr) · 클린아이 채용정보(www.cleaneye.go.kr)
지 원 서 접 수	7. 7.(월) ~ 7. 17.(목) 18: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응시원서 접수 : 온라인 접수만 가능 · 접수처(recruit@jndc.co.kr)
서 류 전 형 합 격 자 발 표	7. 22.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
면 접 전 형	7. 25.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블라인드 면접 실시(직무, 공통역량)
최 종 합 격 자 표 발	7. 29.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
최 종 임 용	8. 4.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적격자 임용 ※ 장소 및 시간 추후 공지

※ 전형 일정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변경 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 예정

■ 가점항목

구 분	가산점수 및 부가점수	비 고
취 업 지 원 대 상 자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10%	채용시험이 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 각 시험마다 동일하게 가점을 부여

○ 취업지원대상자
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·면접전형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를 가산.
-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(직급/직류/임용예정기관)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

※ 선발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.

※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, 가산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(보훈상담센터 ☎ 1577-0606)에 직접 확인 바람.

○ 유의사항

-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응시원서 접수 시 관련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함. 미제출 및 자격종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(가산점 미부여 등)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, 채용시험 단계별 과락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.

■ 제출서류

- 각종 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 처리 가능하나, 본인확인을 위하여 성명 및 생년월일은 표시되어야 함.

1 보상직(경력경쟁)

구 분		제출서류	제출부수
지 원 서 접 수 (파일업로드)	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입사지원서(공사 소정양식) · 자기소개서(공사 소정양식) · 경력기술서(공사 소정양식) ·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공사 소정양식) · 최종학력증명서 · 경력증명서(근무처별) ※ 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,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※ 근무부서 임용예정 직무분야(보상) 경력(담당업무) 명기 ·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	각 1부 (사본)
	가점 (해당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	

2 청년 체험형 인턴(공개경쟁)

구분		제출서류	제출부수
지원서류 (파일업로드)	공통	· 입사지원서(공사 소정양식) · 자기소개서(공사 소정양식) ·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공사 소정양식) · 주민등록초본(거소 변동 포함) 또는 전라남도 소재 학교 졸업(예정) 증명서 ※ 지역제한 확인용	각 1부 (사본)
	가점 (해당자)	·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	

블라인드 채용 안내

- 입사지원서에 사진 등록, 생년월일, 성별, 학교명, 학점, 기입란 없음.
-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(자기소개서 등 포함) 상에 개인 인적 사항(학교명, 나이, 가족관계 등) 관련 내용의 작성을 일체 금지함. 특히, 전자우편 기재 시 학교명,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함.
- 불필요한 개인 인적 사항이 포함되는 등 블라인드 원칙을 어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.

이의신청

- 접수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간
- 접수방법 : 공사홈페이지 > 고객의 소리(VOC) > 일반문의
- 이의신청 처리대상 :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
-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
 -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,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질의 사항
 -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 등), 지적재산권(출제기관),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
 -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

■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는 **응시 자격** 등을 **반드시 확인**하시고 응시원서 및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-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인원의 서버접속으로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- 입사지원서상의 **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, 연락불능, 자격 미비**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,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체검사, 신원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후 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.(임용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.)
- 응시원서 및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이 확인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취소하며,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입사지원이 불가능하며,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최종합격자로부터 제출 받을 예정입니다.
-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함은 물론 추후 입사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.
-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,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직자(본인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를 우편으로 반환하오나 온라인 접수 시 제출서류(JPG, PDF 등 전자문서 형식)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현역의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해야하며, 합격자는 **임용 시 부터 재직이 가능해야 합니다.**
-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행정안전부 「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」 의거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사의 임직원의 친인척(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인척)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, 추후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공사에 친인척 관계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설문지 수령 예정입니다.(필요시 증빙 요청)
-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전남개발공사 「인사규정 시행규칙」에 의거 시행합니다.
- 기타 채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경영지원처 ☎(061)280-06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인사관리규정시행규칙 제11조의2(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)

- ① 사장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 1. 채용비리로 인한 불이익을 입은 피해자를 특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를 다음 차수 동일 조건 채용 진행시 피해 발생 단계 바로 다음 채용 단계의 재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.
 2. 채용비리로 인한 불이익을 입은 피해자를 특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다음 차수의 채용 진행시 피해 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 채용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및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③ 제1항의 사항은 부정합격자 확정·퇴출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, 필요시에는 한시적으로 정원 외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다.